

공

고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9.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의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당사자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 참조
4. 처분(시정할) 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82조(검사·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6조(고지)
6.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시정명령 이행조치 결과 제출기한 : 2026. 9. 11.
8. 시정조치 결과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 행정처분담당
(☎: 02-2680-1752, Fax: 02-2680-1758, e-mail: hyk1116@korea.kr)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9. 유의사항
 - 위의 시정명령 기한까지 처분(시정할)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전파관리소의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 >

기간통신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명 (당사자)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시정할) 내용
제1-01-19-0011호	(주)원텔레콤	110111-***5193	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	- 연간매출액 현황조사 자료 미제출 - 선불통화 보증보험 기간 만료(미갱신) - 선납비요 총액조사 자료 미제출 - 사업장 주소 변경 미등록	위반내용을 시정완료하고, '26.9.11.(금)까지 시정명령 이행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